

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 5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[인]



1. 사 업 명 :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

2. 설치목적 :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

-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4. 시 행 청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

5. 공고방법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sdm.go.kr>)

6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. 7. 5. ~ 2022. 7. 25.(20일간)

7. 설치장소 :

※ 설치장소 붙임1 참조

8. 촬영범위 및 시간
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

9. 의견제출

○ 본 행정예고(CCTV 설치예고)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(2022. 7. 5. ~ 2022. 7. 25.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서대문구청(교통행정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CCTV의 행정예고(공고)에 대한 의견

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 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2-330-1709)

라. 보내실 곳 : 우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(연희동 168-6)

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(☎ 02-330-1870)

※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【 붙임 1 】

- 2022년 홍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지점 -

- 설치대상 : 1개교 1개소
- 설치계획 : 스피드돔 1개

학 교	설 치 지 점	세 부 계 획				형 태	비 고
		개 소	스피드돔	고정형	단속기능		
홍제초교	홍은동 48-275 앞	1	1	-	1	지주식	

※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.

【 붙임 2 】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(전화번호: _____)	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설치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